

**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**

대 통 령 이 재 명 인

2026년 6월 30일

국 무 총 리 김 민 석

**국 무 위 원
법 무 부 장 관 정 성 호**

●대통령령 제36451호

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2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)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보전대상 전자정보(이하 “보전대상 전자정보”라 한다)의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,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.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전요청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
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(이하 “긴급보전요청”이라 한다)을 한 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, 검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·요청·청구를 할 때에는 각각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.

1.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요청 신청
2.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
3.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
4.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의 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법원에 대한 허가 청구
5.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 신청

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라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이하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라 한다)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(이하 “보전조치”라 한다) 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보서 또는 취소통지서 사본을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.

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거나,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1.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 경우: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.
2. 보전조치 결과를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

우: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.

⑥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와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보전요청서 사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5조의2에 따른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,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(법률 제21241호, 2025. 12. 30. 공포, 2026. 7. 1. 시행)됨에 따라,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 그 범위는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면서 보전요청을 하는 전자정보는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,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전요청 관련 신청·요청·청구를 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